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99
----------	------

발의연월일 : 2009. 9. 3.

발 의 자 : 정진교 의원

외 8 인

개정이유

-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산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업무에 대한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준사관)·부사관(부사관) 및 병(병)

제6조 (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직장지회)·연합분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 (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78

제출년월일 : 2009. 09. 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차별 5개년 동안 2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 나.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추가 조성토록 함(안 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20억원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7. 3 ~ 2009. 7. 23(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노인복지기금 추가 조성 검토 보고(2008.10.29)
- 현행 조례(전문)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안산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안산시 일반회계예산으로 40억원을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4억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 출연금을 증감하거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용 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담당 김 용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은 (행정 3352)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및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①~②(생략) ③안산시의 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안산시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4억원씩 총20억원을 출연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연 출연금을 증감 하거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p> <p>제2조(기금의 조성)①~②(현행과 같음) ③안산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안산시 일반회계예산으로 40억원을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4억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 출연금을 증감 하거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